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개인훈련)

2020. 1.

특 허 청
(김 현 아)

목 차

국외훈련 개요

훈련기관 현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지식재산 금융과 담보대출

제1절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1. 지식재산 금융의 정의
2.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
3. 지식재산 금융과 담보대출

제2절 주요국의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현황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기타 국가

제3절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현황
2. 지식재산 금융정책의 한계
3. 지식재산 금융정책 개선 방안

제3장 일괄담보제도

제1절 일괄담보제도 개요

1. 일괄담보제도의 정의
2. 일괄담보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주요국의 유사제도 현황

1. 영국의 영업담보제도
2. 미국의 일괄담보제도
3. 일본의 기업담보제도
4. 기타 국가

제3절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1.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안착의 필요성
2. 도입현황 및 문제점
3.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

훈련결과 요약본

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막스 앤 클러 로펌(Marks & Clerk LLC)
3. 훈련분야 :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4. 훈련기간 : 2019. 6. 20. ~ 2019. 12. 18. (5개월 29일)

훈련기관 현황

명 칭	Marks&Clerk LLC (로펌)
소 재 지	90 Long Acre London WC2E 9RA UK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arks-clerk.com/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및 유럽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대리 ○ 1887년 Croydon Marks와 Dugald Clerk가 공동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ks는 토마스 에디슨의 동료였으며, Clerk는 가스 엔진으로 유명한 발명가 였음 ○ 영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3대 법률사무소 중 하나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브랜드, 디자인, 기술 가치평가부로 편제 ○ 총 587명 근무(변호사 187명, 일반직원 400명) ○ (영국지사) 런던 본사 이외에 버밍엄, 맨체스터, 캠브리지, 옥스포드 등 8개 지역에 지사 운영 ○ (해외) 프랑스, 룩셈부르크, 중국 등 7개국 지사 운영
주요인사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mon Mounte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변리사 및 특허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 ▪ 전세계 지식재산 선도 전문가로 선정(IAM 전략 300)
주요기능 및 수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업무 대리(소송 포함) ○ 특허출원을 위한 특허검색 및 기술분야 로드맵 제공 ○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등 법률자문 수행 ○ 기술가치 평가 등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전문 컨설팅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기술혁신이 동반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핵심 전략의 하나로 삼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지속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재산을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은 1975년 17%에서 2015년에는 84%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의 비중 역시 1985년 10%였던 것이 '10년 40%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KOSPI 기업 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도 2008년 20%에서 2016년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와 지식기반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 같은 기술집약형 지식기반기업은 상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특허나 기술 등 미래가치 지향적인 무형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현재가치가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투자처,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입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가치는 있으나 수익실현이 불확실하고 특히 기술의 사업화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벤처기업으로서는 창업에서 기술의 사업화에

이르는 시기에 일반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자금차입은 대단히 어렵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관행적으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가치가 있는 고정자산을 담보로 선호하고 있어,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외에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많은 지식기반 기업들이 자금부족으로 인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전에 도산해 버리는 등 우수 기술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지식자산을 필두로 하는 무형자산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적인 곳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혁신금융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영국 산업혁명을 촉발한 와트의 증기기관을 '모험자본가'인 볼턴의 혁신적 투자로 상용화 되었고, 에디슨의 백열전구 특허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JP모건으로부터 대출과 투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처럼 혁신자본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동산과 신용도 중심의 금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7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대출조건은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가 95.7%로 거의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본질상 '재산권'으로 대출의 담보물로도 활용될 수 있고 투자의 대상도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물적자산, 인적자산, 노하우 등과 결합하여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일반 상품과 달리 지식재산은 불안전 경쟁시장을 형성하는 무형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금융시장에서 쉽게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식재산이라는 혁신자산과 금융이라는 자본시장이 어우러질 때 우리 경제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함께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경제 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 등 무형투자가 발달되어, 대규모 무형자산에 투자할 과학적 기반 및 금융시스템의 보유 여부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핵심요소라 꼽히고 있다. 특히, 영미 국가들은 기업자산을 일체로 파악하고 담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의 금융활용을 높여 왔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식재산 금융의 역사가 짧아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은행권 관심부족 등으로 부동산 외의 자산은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없고 신용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35.3%가 자금의 부족을 꼽았다고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의 도입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과 담보대출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도출한 뒤, 앞으로 지식재산 금융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동산담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부동산 이외의 동산자산을 활용한 담보대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일괄담보제’ 도입이 2019년 금융정책 1순위로 꼽히기도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괄담보제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영국과 주요 선진국의 유사 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러한 일괄담보제도를 정립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였다.

제 2 장 지식재산 금융과 지식재산 담보대출

제1절 지식재산 금융과 담보대출

1. 지식재산 금융의 정의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 금융은 이처럼 재산적 가치를 가진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 금융에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보증, 융자, 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소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 역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 금융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 금융은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 크게 IP 담보대출, IP 보증, IP 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IP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이며 IP 보증은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술보증기금 등이 특허를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이 보증서에 기반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IP 투자는 정책적으로 IP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IP 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중소기업에게 투자하거나 대학공공연 등이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제도와 펀드에서 기업의 특허를 매입한 후에 기업에게 일정부분의 사용권을 부여한 후 로열티를 받으며 만기가 되면 특허를 매각하여 투자에 대한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인 IP S&LB 투자 제도 등이 있다.

< 지식재산 금융 유형 >

유형	개요
IP 담보대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기업 부실발생시 담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금융기법
IP 보증	보증기관이 특허권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이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금융기법
IP 투자	기업이 보유한 IP를 매개로 하여 민간의 자금을 기업에 투자해 주는 방식의 금융기법

지식재산 금융과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금융활동으로 기술금융을 들 수 있다. 기술금융은 지식재산을 기초하여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 지식재산 금융과는 달리, 기술의 개발에서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술 및 기업에 기초하여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금융과의 주요 차이점은 지식재산은 기술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지식재산권은 등록·거래 가능한 재산권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 대비 정보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분리 가능성이 높아 금융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금융은 권리화 여부에 따라 의미가 구별되기도 하나 연구개발-창업-사업화-기술혁신 단계에서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금융의 범위가 상호 간 중복·확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IP 금융 vs 기술 금융에 관한 개념적 이해 >

유형	IP 금융	기술 금융
분리적 개념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디어와 지식재산권의 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 활용 가치 제고활동으로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제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기업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권리가 부여된 지식재산권 뿐 아니라 기술 등에 근거하여 보증 및 융자, 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 기술이 개발되어 사업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중복·확산 개념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창업-사업화 단계에서 IP 금융과 기술금융의 범위가 중복되어 나타날 수 있음 자산 가치를 인정받은 무형자산 활용 측면에는 IP 금융이 기술금융의 범위로 확대해석 가능 	

2. 지식재산 금융의 필요성

기술혁명을 동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었던 물적 자산보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무형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을 보면 1975년 17%에서 2015년에는 84%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한국 KOSPI 기업 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도 2008년 20%에서 2016년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등 고정자산 담보 또는 신용도에 기초한 대출 관행으로 인해 부동산이 없고 신용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벤처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기가 매우 어려워 혁신 성장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기업·스타트업이 R&D 성공 이후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정책자금 등으로는 소요자본이 충당되지 못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급 불일치의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3~5년차 기간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 추가적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이루어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사업화 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 및 자금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우수한 지식재산권 등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은 담보 마련이 어려운 기술 개발 산업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여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3. 지식재산 금융과 담보대출

IP 담보대출은 지식재산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가치평가액 이내에서 대출을 시행하고 대출 기업의 부실 발생시 담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식재산의 확보 및 보호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의 지식재산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IP 담보대출 또한 지식재산에 금융을 접목시킴으로써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기술집약 기업이 필요자금을 지식재산을 매개로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2절 주요국의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현황

1. 영국

(1) 영국의 지식재산 금융

영국은 1985년부터 회사법(Companies Law)에서 채권, 동산,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동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의 역사가 깊다. 특히, 정부 개입이 거의 없는 영국 금융 산업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2013년에는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 지식재산청(IPO)에서 분야별 금융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한 연구보고서인 **Banking on IP**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데 지식재산 금융을 부채와 자기자본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한 내용, 관련 이슈, 정책적 제언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되어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민간은행들과 IP 담보대출 작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 금융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기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는 1,268억 파운드로서 유형자산 투자규모 880억 파운드의 1.44배에 이를 정도로 높고,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중 절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영국의 IP 담보대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지식재산 금융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투자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보유하면서 적극적으로 IP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지식재산 담보대출 분야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실행하는 기관들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영국 특허청은 2015년 IP Finance toolkit을 마련하였다. 이는 대출기관과 기업 간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지식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해 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또한 지식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업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지식재산이 풍부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특허청은 2016년 1월부터 민간의 시중 은행들과 IP 담보대출 작동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다. 프로젝트는 금융기관, IP 전문 교수, IP advisor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IP를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을 연구하고 case-study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오랜 역사를 가졌고, 보다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민간의 은행들과 함께 진행되며, 프로젝트 결과물이 나오면 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 미국

(1) 미국의 지식재산 금융

미국은 1952년에 통일상법정(Uniform Commercial Code : UCC) 제9조에서 물건 및 무형재화 등 동산담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이후 60년을 거치는 동안 기업의 재고품, 기계설비, 지적재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거래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부동산에 기초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로 인해 금융 위기가 촉발되자, 기업경영환경의 개선책으로 비부동산 담보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 역시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IP 투자 금융모델이 활성화 되어있다. 미국은 1970년대 자산유동화(ABS) 금융기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고,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IP 증권화 시장이 90년대 중반부터 성장해 왔다. 근래에는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지원하는 VC 투자가 증가추세이고, 펀드와 특허관리전문회사(NPEs)가 주도하는 IP 소송, 매각, M&A 등의 투자금융 모델이 발달하였다. 전 세계에서 기술평가를 최초로 시도한 미국은 기술적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평가대상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M&A 추진 시 필요한 무형자산 평가, 엔젤 및 벤처투자, 기술거래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보유국으로 유망 지식재산 확보 체계가 완비되어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IP 가치 평가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웹기반기업의 기술발전 가속화 및 M&A, 혁신 기업의 창조적 기술력 등으로 인해 핵심 IP 거래가 활성화되어 IP투자도 발달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 된 배경에는 특허전문회사의 출현에 따른 다양한 IP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및 이에 대한 IP 펀드의 왕성한 투자활동이 존재한다.

(2) 미국의 IP 담보대출

미국의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압류하여 채권회수를 기대하는 고전적 담보형태로 취급하고 있다. 1880년대 말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전구 발명 이후, 자신이 개발한 백열전구 특허를 GE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자금을 확

보하였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사가 1906년 시티은행을 비롯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 금융권으로부터 기술력 및 상표의 시장가치를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2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용자를 받은 대표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하여 IP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IP 담보대출 친화적인 환경에 힘입어 1990년대 등록된 미국특허의 20% 정도가 2012년까지 한 번 이상 담보로 활용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IP 담보대출에 활용된 미국 특허는 무려 33만 건이 넘는다. JP 모건, Bank of America, Citigroup 등은 해당 기간동안 각각 3만건 이상의 IP 담보대출을 제공하였다¹⁾.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의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하는 대출 관행에 따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만을 토대로 IP 담보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기업이 보유한 자산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특허도 전체 담보의 일부로 활용됐다는 해석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에서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담보 대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IP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연방 또는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담보 지원정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 주도형이 아닌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IP 담보대출로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손꼽힌다.

1) Relecura IP Intelligence Report(2015) "IP Backed Financing Overview of Trends"

3. 일본

(1) 일본의 지식재산 금융

'13년 발표한 일본재흥전략에서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적절히 평가하여 금융에 반영하는 지적재산금융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특허청은 지적재산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 사업평가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 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지적재산금융의 방향 및 표준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04년 신탁업법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신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지식재산을 통한 자금 조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지식재산권 신탁은 권리 침해로부터의 보호, 효율적인 관리 및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일괄관리를 목적으로 한 특허권 신탁과 영화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신탁 등이 있다.

(2) 일본의 IP 담보대출

일본의 경우 IP 담보대출의 형태는 크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기반 정비기구에서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가이드'를 일부 제시했으나 이 가이드에 따르면 IP 담보대출과 일반 대출의 조건이나 내용 등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실제 일본은행들도 대출 구분만 분리할 뿐 손해율은 일반대출과 차이를 두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민간 금융기관의 IP 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정책금융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일본정책투자은행을 중

심으로 IP 담보대출이 시행되었다. 일본은 1995년부터 유망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기업의주식을 보유하여 새로운 평가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지식재산 담보융자제도를 완비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연구를 위한 '기술평가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이에 일본정책투자은행에서 1995년부터 IP 담보대출을 시행하였고 2009년에는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중소기업에 지식재산 담보융자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에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평가 및 담보활용을 적극 임하도록 하는 지적재산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2004년에는 신탁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도 신탁업을 할 수 있도록 신탁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식재산 상품판매의 기틀을 마련하여 특허를 통한 자본조달 및 중개사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일본 특허청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를 위하여,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평가하는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지원사업'을 시범실시 하였고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을 평가하고 가시화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사업 평가서 작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연결시키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촉진사업'도 진행하였다.

앞서 서술했다시피 민간 금융기관의 IP 담보대출에 대한 관심은 적은편이다. 그러나 치바은행의 지식재산활용 융자, 야마구치은행의 야마구치 지식재산평가대출제도 등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은행도 일부 존재한다.

4. 기타 국가

(1) 중국

① 중국의 지식재산 금융

중국에서 지식재산 금융은 국무원의 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중국 국가지식산업국(SIPO)과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매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 금융은 2008년 국무원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강요'를 수립한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제발전의 주요 산업 발전 전략과 지식재산 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추진하여 IP 담보대출 중심의 정책금융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의 지식재산 금융 특화된 정책으로는, 2010년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식재산권 금융 활용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2015년에는 지식재산 금융 수단의 다양화,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식재산 담보, 증권, 보험 등 다원화된 지식재산권 금융 수단을 활성화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의 IP 담보대출 및 거래소를 운영하여 기술거래 및 사업화 분야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② 중국의 IP 담보대출

중국은 정부 주도 하의 IP 담보대출 중심의 정책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에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IP 담보대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06년 특허담보 시범사업 시행 후, 1907년 물권법의 제정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활성화시

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08년 국가지식산업국 주도하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IP 담보대출을 시범 실시하였고, 특히 특허권 담보 용자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다. 2006년 중국교통은행에서 법무법인, 자산평가회사 등과 함께 중국 최초의 IP 담보대출을 실시하여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발굴·실현하며 원만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허 담보 대출 시범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 특허보험의 형태까지로 확장되어 7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특허 담보 대출, 특허 보험에 대해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인 지방 정부는 IP 담보대출이 가지고 있는 신용 위험을 일부 부담하여 금융권이 IP 담보대출을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거래소, 저작권 거래소를 설치하여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범 지역의 확대와 지방 정부의 위험 관리 참여는 전국적으로 지식재산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특허 담보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정책 및 업무지침 개선, 지식재산권 관리서비스 체계 수립 등을 추진하면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중국은 2012년 IP 담보대출 금액 100억 위안을 돌파한 이후, 2017년에는 당해연도 IP 담보대출 금액이 1000억 위안을 돌파하였다.

중국은 현재 지식재산권 담보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IP 담보대출 주관 기관인 국가지식산업국 등 중앙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지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지식재산 행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국가지식산업국의 정책 수립과 지방 정부의 집행으로 구현된다. 중국에서는 지역별 IP 거래소, 문화산권(저작권)거

래소, 판권 거래소 등을 설치하여 IP거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지방정부마다 이자할인, 대출손실보조, 평가비용 지원, 담보비용 지원 등 별도의 IP 담보대출 지원정책이 존재하며 각 지방정부별로 지식재산거래소를 설치하여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돕고 있다. IP 담보대출 모델 또한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한다.

< 중국의 지역별 지식재산 담보 대출 유형 >

유형	지역	특징
정부주도형	■ 상하이, 푸둥	■ 정부가 출자한 지식재산센터가 담보대출 정책 결정자, 95% 이상의 위험 부담
정부보조형	■ 베이징	■ 정부는 은행의 담보 대출이 확정되면, 기업에 대출 이자 지원
정부지원혼합형	■ 우한	■ 정부주도형 + 정부보조형
시장주도형	■ 강소성	■ 정부개입 없음

이처럼 중국은 중앙·지방정부의 노력으로, 혁신창업과 과학기술형 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급속도로 활성화 되었다.

(2)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2013년 'IP HUB 마스터 플랜(10개년)'을 수립하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다수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나 자산 규모가 약한 기업들에게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계획(IP Financing Scheme)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 금융계획을 통해 기업들의 지식재산 금융 활용도를 높여, IP 거래를 촉진하고 관련 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정부가 금융기관과 함께 IP 담보대출 위험부담을 공유하였다.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및 이전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가나 개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유동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IP ValueLab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동안 협력은행 3개사가 1,200만 달러에 이르는 담보대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2017년 개정된 지식재산 허브종합계획에 따라 혁신기금 등이 포함된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새로운 협력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IP ValueLab을 통해 싱가포르 사모투자전문회사 Makara Capital과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최초의 지식재산기반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3) 말레이시아

2013년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권공사(MyIPO)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약 600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 금융계획인 IP Financing Scheme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대출 금리의 2%를 보조해 주고, 신용보증 회사인 Bhd를 통해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대출손실의 50%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P 가치평가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IP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50만달러를 투입하여 IP 마켓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 장려를 위해 지식재산권 금융기금을 설치하고 IP 담보대출 활성화, 지식재산권 평가기관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다.

제3절 지식재산 금융 및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1.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및 IP 담보대출 현황

우리나라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규정'에 의해 IP가 담보 가능한 동산 범위로 포함되면서 담보대출의 법적인 근거를 확립하였다. 정부주도 하에 기술금융정책 차원의 IP 담보대출을 시작으로 현재 기술신용평가대출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중심으로 IP 금융이 전개되어 왔다.

국내의 IP 담보대출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었다. 1996년부터 약 4년 동안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시 심사평점 중 기술력 평점의 비중을 40%로 대폭 높여 특허권만을 담보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을 시행하였다. 또한, 1999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술담보자치평가증서'를 통해 물적 담보 없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2006년 한국산업은행이 특허청에 가치평가 수수료(500만원)를 지원받아, 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담보 특허권 매각을 위한 시장의 부재,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높은 부실률, 금융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델 부재, 그리고 국내 특허권의 낮은 품질로 인한 담보력 부재 등으로 인해 이러한 시도들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2013년 특허청과 산업은행의 MOU를 체결을 시작으로 IP 담보대출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주요한 금융 시스템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산업은행에 이어 기업은행, 국민은행 순으로 IP 담보대출이 시행되었고 현재는 5개의 은행에서 지식재산 담보대출

을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IP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실제 담보대출 자금지원 여부는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이 IP 가치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약 8,388억원 규모의 금액을 대출하였다.

2018년 금융위와 특허청이 함께 발표한 '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IP 담보대출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고평가비용과 거래시장 비활성화로 인한 낮은 회수가능성을 은행이 IP 담보대출을 기피하는 주 원인으로 보고, 은행의 취급비용 및 회수리스크를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현재 국책은행은 물론 5대 민간은행이 IP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18년 884억원 수준이었던 신규 담보대출이 전년 대비 4.9배 증가하여 '19년 기준 4,331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또한, '19년 상반기 특허청이 실시한 IP담보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행은 특허 담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기업의 75%가 신용대출 보다 금리우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규공급 기준으로 지재권을 담보로 하여 실행하는 IP 담보대출액은 4,331억원, 지재권을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IP 보증액은 7,240억원, 우수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또는 지재권에 직접 투자하는 IP 투자액은 1,933억원에 달하여 총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가 1조 3,5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 7,632억원에 이어 2019년에는 전년대비 77%가 증가하는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의 혁신금융 기조와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기업 및 금융권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우수 IP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은 수요에 비해 미흡하며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적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기업이 IP 평가에 기반하여 사업화 자금을 제공받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지식재산 금융 정책의 한계

(1) IP 담보대출 부실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취약

초기 IP 담보대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IP 가치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담보대출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지속적인 담보 IP 부실발생으로 금융권에서는 기술신용평가를 활용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등급, 활용등급을 활용한 사전적 기업 필터링 과정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부실 발생률이 낮아졌으나 신용이 불량한 중소기업의 경우 IP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수지원 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IP 거래시장의 미성숙, 가치변동 등 무형자산의 태생적 한계인 다양한 리스크로 인해 부실 발생 시 수익성 목적이 강한 펀드의 내재적 속성상 회수가능성이 낮고, 담보 IP에 대한 회수지원펀드의 매입 여부·가격을 예측할 수 없어 위험 관리가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부실 IP 매입 시 재평가를 통해 IP 가치를 재산정하나, 심사 단계에서의 가치평가 금액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은행 손실에 대한 보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다. 회수지원펀드를 통해 부실 IP를 매입·회수하더라도 제3기관 매각이 어려워 IP 매각을 통한 손실 보전의 한계가 존재한다.

(2) IP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특허청이 지정한 가치평가 기관에서 사전적 기업 필터링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IP를 대상으로 IP 가치평가를 수행하며, IP에 관한 합리적 담보대출금액의 한도 및 대출기간 등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평가 결과에서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부실발생시 회수 리스크가 크므로 가치산정 프로세스의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담보 IP의 부실 발생시 IP 매각 가능성이 낮고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나 IP 가치평가금액 산정시 이러한 위험성은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객관적 평가기준 미흡, 평가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IP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금융·투자 기관의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 이러한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은행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3)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법제·인프라 미비

지식재산 금융의 대상이 국내 등록특허로 한정되어 해외 등록특허나 출원 중인 특허를 배제하고 있는 등의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존재하고,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금융 취급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특히 지식재산 금융을 시행하는 금융권의 IP 전문인력 부족은 자금회수 등 리스크 관리 불확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식재산 금융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IP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특허관리 회사가 국내에 부재하고 IP 거래소 및 IP 유통 플랫폼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

으나, 부실시 담보 IP의 가치 하락이나 재매각 시장 부재로 대출금액 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3. 지식재산 금융정책 개선 방안

(1)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구조 개선

부실 발생시에 담보 IP를 매입하도록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하여 회수지원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지원펀드의 매입가격을 예측할 수 없고 부실화 된 담보 IP의 재평가된 매입금액이 대출금액에 비해 훨씬 낮기 때문에 은행은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회수지원펀드는 매입 후 수익화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 회수지원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IP 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수지원 구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2019년 3월 의결된 발명진흥법에서는 회수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부실 발생 시 은행의 손실보전을 위해 특허관리전문회사 등을 활용하여 회수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담보 IP 건수, 부실율, 손실보전을 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정부·은행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부실 IP를 매입하여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회수지원펀드는 역시 현재 방식의 은행별 회수지원펀드 구성을 지양하고, 모태펀드의 IP 투자펀드가 회수전문기관의 유망 I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IP 가치평가 신뢰성 제고

IP 가치평가 모델에 시장에서의 회수가치 등 시장요소가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거래 활성도를 평

가하거나 IP 시장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요소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DB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민간을 대상으로 가치평가기관을 확대하여 가치평가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러 분야의 민간 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평가요소별 전문영역을 특화하여 다양한 평가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권 스스로 IP 금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사후 점검 방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 관리활동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으로 고품질의 평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형태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평가기관 자체 품질점검, 외부 심의 확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품질관리협의회를 통해 우수사례나 평가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품질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IP 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금융연수원, 금융투자교육원 등에 지식재산 금융·가치평가 강좌 운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IP 담보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금융인력에 대한 IP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선도대학에 관련 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식재산 전문대학원에 지식재산 금융·가치평가 전문학위 과정을 도입하여 지식재산 금융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된다 할 수 있다.

또한, 등록특허만을 IP 가치평가 지원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망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원 중인 특허도 가치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식재산 금융의 효율적인 확산 촉진을 위해 금융·투자기

관, 가치평가기관, 산학협력단, 정책부처 등 관계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하다. 각 참여기관의 지식재산 금융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장애요인들을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상시 협업채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식재산 금융의 추진 현황이나 성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석구석 지식재산 금융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일괄담보제도

제1절 일괄담보제도 개요

1. 일괄담보제도 정의

일괄담보제이란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기타 동산 등 유·무형의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대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종(利蹤)자산에 대해 포괄적 담보로 설정해 평가·취득·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을 의미한다.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형태에 따라 담보물은 모든 자산을 포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종자산으로 구성된 집합담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일괄담보제도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담보권자에게는 권리의 실행에 있어 용이함을 제공한다. 또한 담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 기업의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대출을 제공하고자 하는 은행에서는 해당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과 지식재산권 및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 라이선스를 포함해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 하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일괄담보제도 도입의 필요성

선진 주요국의 담보실무에서는 지식재산권과 다른 동산자산 또는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재고 또는 장비를 가치평가하고 일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가 지식재산권만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하는 사례보다 훨씬 많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는 부동산 자산에 비해 용이하지 않으며, 또한 지식재산 유동화의 성공사례도 많지 않아 금융기관은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금융제공을 꺼려한다. 부동산의 경우 그 자체가 가치가 높고 안정적이며 금융기관이 다룰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자의 신용도보다는 부동산 자체에 관심이 있다.

중소기업 자산 중 동산 담보는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새로운 신용 보강 수단으로 자금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산 자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경우 가치평가가 어렵고 유동성이 낮으며 위험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허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치평가의 위험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식재산을 유일한 담보물로 제공하기 보다는 관련 지식재산권을 패키지로 하거나 또는 동산 및 채권 등 다른 자산을 함께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작더라도 기업의 물적 자산(지식재산이 체화된 기계·기구 등), 인적 자산(전문인력), 노하우와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를 결합할 경우 그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자산의 담보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취득·평가·실

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회사 자체에 대한 담보제도라 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이다.

제2절 주요국의 유사제도 현황

1. 영국의 영업담보제도

영국의 영업담보(floating charge)제도는 통상의 영업수행과정 중에 있는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영업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회사담보를 말한다. 즉 담보설정자인 회사가 영업재산을 일체로 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담보제도로서, 통상의 영업수행과정 중에 있는 영업재산 위에 설정되는 물적 담보제도가 바로 영업담보제도이다.

영업담보의 목적물은 민법상의 담보권의 객체를 포함하여,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영업에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그 범위를 한정하여 영업의 일부를 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양자의 어느 경우에도 담보설정자인 회사가 통상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목적물인 영업의 구성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처분한 재산은 담보권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처분한 대가로 영업에 필요한 다른 형태의 재산을 구입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이라는 추가행위 없이도 기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목적물의 구성요소가 변동하는 유동담보 또는 부동담보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영국에 이러한 부동담보제도가 확립되게 된 계기로는 형평법이 보통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한 최초의 사례인 *Holroyd v. Marshall*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부터 회사의 영업재산에 오늘날의 부동담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양도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1845년의 회사정리조항법에 의한 보험증권의 효력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1860년대 담보부사채제도는 현재의 부동산담보제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이후에도 부동산담보는 일련의 판례에 의해 충실히 보충되어 영국의 회사법에서 채택되었고, 현재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영국의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현재와 장래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일의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담보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부동산담보에서는 담보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회사의 현재 영업재산·장래취득재산은 물론이고 자본준비금 등에 이르기까지 목적물의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시기적으로 나중에 설정된 것이라 하도 동일 자산에 대해 부동산담보권 보다 고정담보가 우선되며 결정(Crystalization) 과정이 있다. 즉, 부동산담보권이 회사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담보권자는 고정담보권자, 우선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그 잔여액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은행에서 담보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 업체가 담보물을 관리하며 담보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담보대출 연계 보험이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만큼 활성화 되지는 않았으나 민간 주도로 잠재 수요자를 발굴 또는 브로커 등을 통해 매수인 타색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실행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일괄담보 등기 시 고정담보와 부동산담보를 모두 표시하며 담보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2. 미국의 일괄담보제도

미국의 일괄담보제도(blanket lien)의 근거는 담보부거래의 전반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산을 목적물로 담보권을 설정하지만 계속해서 채무자가 통상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목적물을 점유하여 사용·수익·처분하며, 이로 인한 자본의 증감과 목적물의 변동을 허용하는 담보제도를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일괄담보제도라고 한다.

미국의 일괄담보제도에 따르면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포괄적 근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러한 포괄적 담보권은 광범위한 권한을 담보권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므로 금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포괄적 근담보권 제도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괄담보물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방법, 주법, 개별 법률상 등기 등록을 모두 해야한다. 즉, 제3자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담보에 관한 법률과 지재권 관련 법률 모두 등기 등록을 해야 하며 우선권은 등기, 등록의 선후에 의해 정해진다. 즉 영국이나 일본의 유사제도와는 다르게 고정담보라고 해도 일괄담보보다 우선되지 않는다.

변동성이 큰 동산 담보물의 특징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주기적인 실사가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담보물 전문관리 기업의 실사 벤처캐피탈과의 공동실사 등 담보물 전문관리업체 및 방식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담보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에 대비하여 담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며 문제시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형태의 담보대출 연계보험이 활용되고 있다.

일괄담보가 활성화되어있는 미국의 경우 담보물의 평가, 관리, 실사 및 처분을 오랫동안 실행해온 다수의 전문기업을 통한 사적 실행이 활성화 되어 있다. 보통 처분시 팀단위 평가를 시행하는데, 성

장속도가 빠른 회사는 그 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대출금 회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일괄담보 등기 시 채무자 및 채권자의 정보와 함께 담보물기재란에 현재 및 장래의 채무자의 모든 자산 및 재산을 기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담보 대상물에는 동산, 무체동산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

3. 일본의 기업담보제도

일본의 기업담보는 영국의 부동담보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기업담보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또는 특정 채권에 물상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유기적 재산을 일체로 부동의 상태에서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일본의 기업담보제도는 도입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국의 담보제도와 비교하여 다소 변형된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일본의 기업담보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담보목적물을 주식회사의 총재산으로 제한하여 그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과, 설정 주체를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 등의 기업에서는 담보권의 설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00년대 초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도로 9종의 특별법상의 재단저당제도와 일반담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재단구성절차의 번잡성 및 이용주체와 재단구성주체의 제한성 등 커다란 결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경제계의 결함시정 및 보완 요망의견 등을 고려하여 회사를 위한 담보법제를 창설하기 위해, 영국의 부동담보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경제계의 반응

을 수용하여 1958년 법률 제106호로 회사를 위한 담보법제인 기업 담보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기업담보법의 경우 영국의 부동담보제도를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으나, 여러 부분에서 영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기업담보법에서는 기업담보의 설정주체를 대규모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입법상의 흠결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자금조달이 비교적 원활한 대규모주식회사를 위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전략되어 제도의 본질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외면한 제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의 기업담보제도에서는 기업 자체가 아닌 회사의 총재산을 담보목적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총재산에 포함되지만 기업 특유의 기술이나 노하우, 권리관계 등은 총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회사의 소극재산만이 담보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영국과 유사하게 특정담보권이 기업담보권과 경합하는 경우 특정담보권이 나중에 설정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취득한다는 특징이 있다.

4. 기타 국가

(1) 중국의 유사 제도

① 결합 담보대출

중국의 경우 기업이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주주권과 유형자산을 담보물로 묶어서 상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결합 담보대출 제도가 존재한다. 이런 패턴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담보물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며 일정한 보급가치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재권을 분할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업은행은 종종 질권을

설정하는 지재권이 반드시 전체 대출 본금과 이자를 커버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게 된다.

② 담보회사 담보대출 등

중국은 또한, 기업은 지식재산권 또는 다른 자산을 묶어서 역담보물로 하고 전문 담보회사에서 상업은행에서 전액담보를 제공하는 담보회사 담보대출 제도도 있으며, 일부 상업은행은 정보의 우세를 이용하여 주권투자기금 및 리스크 투자기금과 협력하여 리스크 자본과 지재권을 담보로 성장 잠재력이 비교적 큰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재무컨설팅, 종목추천, 기금위탁관리 등을 포함한 일괄된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 프랑스의 영업질

프랑스의 영업질은 상거래계에서 발달한 상관습을 그 연원으로 하고 있다. 대륙법계국가 중 자생하는 회사담보제도를 창설한 프랑스의 영업질은 상인의 영업재산을 포괄하여 교환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파악하고, 영업재산에 권리의 객체성을 부여하여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물적 담보이다.

프랑스에서는 회사의 영업재산을 포괄성을 띤 유무형의 동산으로 파악하고, 영업재산 중 일정 동산을 일체로 포괄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회사의 영업재산은 영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결한된 유기적·조직적 재산의 집합체로 파악하여, 각각의 물건은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한다고 본다.

프랑스의 영업질은 설정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어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주체와 범위가 비교국가 중에서 가장 넓은 장점을 가진다. 영업질은 일반법

상의 담보제도를 근거로 영업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인의 신용창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영업재산의 교환가치를 중시한 것이다.

제3절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1. 일괄담보제도 도입 및 안착의 필요성

해외 선진국의 일괄담보제도는 도입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 또는 다양한 이종(利蹤)재산의 일부를 일체로 교환가치를 가지는 집합물로 파악하고, 이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여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의 추진이다.

또한 기업의 총 자산 또는 영업 위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일괄담보제도에서는 담보를 구성하는 대상물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개별 재산 위에 각각의 담보권이 설정될 때보다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괄담보제도의 기능은 훌륭한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의 원활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는 2018년 11월 VIP 지시사항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임시방편적이고 기업 입장에서 수동적이었던 자금조

달 촉진 방향에서 벗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및 장래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영업의 교환가치를 통하여 스스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와 도입의 당위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도입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관련

개정안(제2조 4의2)에 의하면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으로 정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종류의 동산에 대한 일괄담보의 길을 열어두었으며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인적 제한을 확대하여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유통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IP 담보대출이 내재하는 한계로 현금흐름 등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 배제 시 부실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또한 기업의 주력제품과 담보특허의 연관성이 낮거나 하나의 기술을 다수의 특허로 분할하여 중요성이 낮은 특허를 담보로 제시하는 경우 즉, 담보특허의 핵심성이 낮은 경우 부실 시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치 평가금액은 참고만 할 뿐, 대출금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며 담보인정비율 역시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 대부분의 해외 사례와는 달리, 담보에 대한 가치 평가 이후 평가금액의 일정비율을 대출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인정비율은 평균 30~50%로 은행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설정

되는 등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2) 평가 관련

지식재산권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일반 동산(기계장비, 재고자산, 채권 등)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일반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는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합하여 평가한 경험이 없고 현재로써는 각각의 평가기관은 존재하나 이를 일괄평가 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일괄담보제 도입에 따른 일괄평가 및 이에 따라 담보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합한 평가기관이나 평가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마련 초기에는 일괄담보제를 기업이 보유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하고자 하였고 그 경우 기업가치 산출 등 담보가치 상승을 반영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었으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기업이 선택적으로 일괄담보물을 구성할 수 있어 가치 상승분을 산출하는데 다양한 제약요인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기업이나 은행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일괄담보물의 가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나타난다. 은행 담당자들의 책임 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책을 위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실 시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여 대출시와 처분을 통한 회수금액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또한 기업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기계·설비류를 제외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등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담보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가 존재하여 동산담보 활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3) 등기 관련

등기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간에는 담보권의 일괄 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동산 및 채권 등기부로 이원화되어있는 등기부를 일원화 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괄담보등기를 마친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적 장부(등록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공적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일괄담보제 도입에 따라 다른 종류의 담보목적에 관한 등기 및 등록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일괄담보의 등기와 개별 법률에 따른 등록이 있는 경우에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와 등록의 선후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UNCITRAL 모델법을 비롯,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우선권은 등기, 등록의 선후에 의해 정해진다.

(4) 사후 관리

은행은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통해 여신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즉, 동산 담보물에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담보물의 위치정보·가동 여부·월별 가동률 정보 등을 확인하고, 정상범위를 벗어난 담보물의 이동 또는 단말기 해제 시 실시간 이상신호 알람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IoT를 활용하더라도 악의적 훼손 및 처분까지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IoT 활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관리 담보물의 가치보다 큰 경우도 있어 활용의 한계가 존재한다.

(5) 처분 및 회수 관련

일괄담보제 도입에 따라 사적 실행의 요건이 명확해 졌고,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하게 되어 발명진흥법상 IP회수지원기구를 통하여 사적 실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발명진흥법상 IP회수지원기구를 통하여 사적 실행이 가능하게 된 점은 고무적이나, 개개 인간의 사적 실행의 허용에 대해서도 IP를 규율하는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사적 실행이 추진되더라도 동산 및 IP를 처분할 민간 거래시장이 부재하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경우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 거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민간 거래시장을 통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나 일부 민간 서비스업체 등을 통한 처분이 가능하나 민간 거래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기업선정요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분리매각 시 동산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부실담보의 회수 및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IP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부실담보의 회수 및 처분은 한국발명진흥회를 전담기관으로 하는 별도의 IP 회수 전문기구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일괄담보제도에 대한 회수지원의 주체 및 범위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

3.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

(1) 기업 및 담보에 대한 사전검토

일괄담보제는 현금 흐름이 미흡한 기업에게도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이나, 기업의 기술력, 성장가능성과는 별개로 현금흐름은 기업 파산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부실율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담보특허의 핵심성에 따라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P 담보가 포함되는 경우 부실률 감소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해 가치평가 이전 기업 및 담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괄담보제도 운영시 가치평가를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의 신용도를 토대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예비 평가를 시행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이나 민간 IP 서비스 업체 등 IP 전문 평가인력은 담보특허의 핵심성 및 동산담보와의 연계성 등을 토대로 IP 리뷰를 실행하여 대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면, IP 담보대출시 나타났던 부실률 상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집합담보의 일괄평가 및 처분

일괄담보제도의 제도 기획 초기 추진 방향은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으로 구성된 담보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평가-취득-처분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개정 방향이 이종자산으로 구성된 '집합담보'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일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한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분리되어있는 평가기관으로 인해 이종자산으로 구성된 집합담보에 대한 평가경험을 보유한 기관이 없으며, 일부 동산의 경우 과거 동산담보대출 과정에서 적절하게 평가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저해요인이 존재한다.

최근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서도 일괄 평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러한 일괄담보에 대한 평가는 일괄평가 및 개별평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일괄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 제약으로 도입 초기에는 개별평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즉, 도입 초기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IP 평가와 동산담보평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각각의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도 진행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집합평가에 따른 가치 상승효과

해외의 경우 일반동산과 특화된 지식재산의 집합 담보가 처분 시 매각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담보활용도 및 담보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집합담보 평가에 따른 가치 상승효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도입 초기의 한계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별평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집합담보 평가에 따른 가치 상승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로 집합담보 평가에 따른 IP가치 상승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IP 담보물에 대해서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IP 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평가보고서를 받는 것이 일괄담보대출 시행에 용이하므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평가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즉 개별 동산 및 IP 담보물의 가치 평가 결과와 함께 앞서 언급되었던 IP 가치 상승분을 종합 산출하여 일괄 보고서로 제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감정평가 보고서와 IP 평가 보고서가 짜깁기 된 형태가 아닌 이를 녹여낸 종합분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며, 가치를 산출해낸 논리적 흐름과 근거자료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 다만, IP 가치 상승분의 경우 초기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할 수 있어 은행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추후 평가데이터가 누적되고 평가 전문성이 제고됨에 따라 단일 평가를 제공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IP 및 동산 평가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로 민간거래시장 및 전문기업의 부재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주요국과 국내의 가치평가방법을 유사하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체감하는 신뢰도의 격차는 크며, 이는 민간거래시장의 성숙도의 차이 및 전문화된 기업의 유무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간거래시장이 성숙할수록 방대한 거래 데이터가 수집되어 가치 평가 시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관련 기업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치평가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주요국의 경우 산업분야별로 전문화된 기업들이 가치평가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요국의 민간 전문기업 예시 >

- ▶ **FKKS(뉴욕)**: 영화계 근무경험이 있는 대표 및 전문가를 포함한 Film/TV production 전문 자산관리회사
- ▶ **Collateral Specialists(캘리포니아)**: 미국 전역에 550명 이상의 직원 보유한 업력 20년 이상의 재고자산 관리, 검사 전문기관
- ▶ **EquipNet(메사추세츠)**: 전세계 15개 지사를 보유한 업력 20년 이상의 제약설비, 의료기기 시설 전체 등 장비 전문 처분회수 업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치평가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민간주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산업분야별 전문기업 육성이 요구된

다. 즉, 부실담보 처분 시 다양한 민간 주체와의 다양한 방식의 연계협력을 통해 민간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내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별 전문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및 산업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결론

지식재산 금융의 투자상품은 지식재산이고, 지식재산은 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자산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 가능성을 가진 양질의 지식재산의 공급과 다양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수단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업은 기존 유형 자산 중심의 자금조달 방법 외에 무형자산에 기초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짐으로써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질량이 자금조달 성공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기업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려고 하고, 이는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을 비롯한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금융을 실현하여 혁신적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영미 국가들은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기업자산을 일체로 파악하고 담보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등 오래전부터 무형자산의 금융활동을 높여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지식재산 및 무형담보에 대한 금융의 역사가 짧아 제도가 미흡하고, 특히 민간 영역에서 관련 분야의 시장이나 인력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무형자산에 대한 금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비롯한 금융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 금융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식재산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이 막 시작되고 있는 일괄담보제도 역시 바로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정부와 민간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무형자산 시장의 꽃, 지식재산 시장의 꽃을 피울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한국형 일괄담보 도입방안(IP이슈를 중심으로)', 2019

정소민, '동산·채권담보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9

특허청, '2018 지식재산 백서', 20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2019

한국발명진흥회, '담보IP거래지원방안 연구', 2018

금융위원회/특허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2018

이철편, '혁신성장을 위한 IP금융 발전 방안', 2018

강윤석, '특허기술 활용 촉진에 위한 지식재산 금융 및 특허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2018

조아라, '중국의 지식재산 금융 정책 분석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018

이철편, '국내 IP 금융의 현황 및 발전방안', 2017

박성화/배동석, 'IP 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2016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IP 담보대출을 위한 IP 가치평가 모델 연구', 2013

관계부처 합동,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20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금융 생태계 조성방안'
, 2013

손승우/김태원, '지식재산 담보의 범위와 공시제도', 2013

하헌주, '일본 기업담보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하헌주, '영업담보제도의 생성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06

영국 특허청 홈페이지

훈련결과 요약본

훈련자	김현아	직급	5급
소속	특허청 다자기구팀		
훈련국	영국	훈련기간	'19.6.20~'19.12.18
훈련기관	Marks&Clerk LLC	훈련구분	단기 개인훈련
훈련목적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보고서 매수	51
내용요약	<p>기술 혁신이 동반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과거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와 지식기반산업의 빠른 성장에도 부동산이 없고 신용이 부족한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기가 매우 어렵다.</p> <p>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지식재산 금융의 역사가 짧아 일괄담보제도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하고 은행권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외의 자산은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35.3%가 특허기술 사업화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의 부족을 꼽기도 하였다.</p> <p>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식재산 금융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현재 제도상 나타나는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본다. 특히 현재 활발히 추진중</p>		

인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현황과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 및 안착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지식재산 금융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금융기관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한다. 대기업에 비해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기술 집약형 초기 기업은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중요시하는 금융관행으로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3~5년차 기간인 죽음의 계곡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깊은 지식재산 금융의 역사를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IP 가치평가 전문 인력을 보유하면서 적극적으로 IP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IP 담보대출 분야에 있어 영국 특허청은 대출기관과 기업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고 민간 시중 은행들과 IP 담보대출 작동을 위한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민간 중심으로 다양한 IP 투자 금융모델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따른 IP 가치평가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혁신 기업의 창조적 기술력 등으로 인해 핵심 IP 거래가 활성화되어 IP 투자도 발달하였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 전체를 담보로 하여 IP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2009년부터 6년간 IP 담보대출에 활용된 미국 특허는 33만 건을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 IP 담보대출의 형태는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의 IP 담보대출 중심의 정책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특허 담보대출의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중국은 중앙·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혁신창업과 과학기술형 기업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급속도로 활성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IP 담보대출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도되어 왔지만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현재 4,331억원 규모로 IP 담보 신규 대출이 확대되었고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는 1조원을 돌파한 거승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우수 IP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은 수요에 비해 미흡하며 뛰어난 무형자산을 가진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제공받아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 정책의 한계로는 IP 담보대출 부실발생에 대한 리스크 관리 취약, IP 가치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부족, 지식재산 금융 확산을 위한 법제도 및 인프라 미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수지원전문기관 도입 등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구조를 개선해야하며, 민간시장의 확대 및 사전 품질 관리활동 등을 통해 IP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식재산 금융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적합하고 미비된 현재의 법제도 및 인프라에 대한 혁신을

	<p>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추진 동력을 얻어야 할 것이다.</p> <p>이에 더불어 영국의 영업담보제도, 미국의 일괄담보제도, 일본의 기업담보제도와 같이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대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종자산에 대해 포괄적 또는 집합적 구성으로 담보를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에 대한 도입 현황 및 안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 <p>현재 대출, 평가, 등기, 사후 관리, 처분 및 회수 단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기업 및 담보에 대한 사전검토, 집합담보의 일괄평가 및 처분방안 마련, 집합평가에 따른 가치 상승효과,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등을 꾀하여 한국형 일괄담보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p>
--	--